

2000회계년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0회계년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01. 6. 9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1. 6. 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당초 세입예산 2,640억8천1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861억1천7백만원이었으나 세입을 가감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957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580억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12.8%인 377억4천1백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개요는 당초 예산액 2,640억8천1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861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188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388억7천1백만원을 제외한 284억4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지출원인 행위액대비 11.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일반회계 결산은 당초 예산액 9,613억6천6백만원에서 예비비 1,015억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조628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1조618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5천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2,640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더하고 세입을 가감한 징수결정액은 2,957억원으로 결정하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7.2%인 2,58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377억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대비 12.7%에 해당하며 이중 사업외 수입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 대비 88.5%에 해당하는 334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은 예산성립후에 예산과목과 예산액이 지출의 한도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만, 세입예산은 이와는 달리 수입재원계획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지방세 법령에 의해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외수입에 있어서는 각 집행부서의 장의 정책결정방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외수입 전망은 과거 수년간 반복된 수입실적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항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입예산액에 반영하여 예산과 결산(수납액)과의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며 정확한 추계로 예산편성과 운용에 적정수준 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을 줄이고 미수납처리에 있어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이·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전용예산은 총 3건에 62억7천6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제도는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전용의 제도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시내버스차고지 매입비 59억원, 청계천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 위탁운영 2억8천4백만원을 “전용”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써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사후통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예외적으로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

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예산은 통상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월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13.6%인 388억7천1백만원으로 이는 전액사고 이월로서 택시브랜드사업 지원(콜기능 설치) 등 총 22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처리는 연도내에 지출된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산확보책으로 연도말에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와 처음부터 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치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운용에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예산액대비 2.74%인 7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28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22억4백만원은 지출하고 5억3천9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9천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의 주원인은 차적변조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배상금지급 판결에 따른 소요예산 신고통수단도입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등에 사용하였다 하나 신고통수단 도입관련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억원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의 의의와 예산의 관련성 제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 먼저, 결산과 예산의 관련성 제고입니다. 예산이 1회계년도에 있어서는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결정적 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무엇보다도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과연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계수 등이 사실대로 재정활동을 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집행결과 소기의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적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또는 지적함으로써 잘못된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여 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평가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조3,20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1,715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조4,922억원 중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1조4,23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조3,207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715억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조4,922억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조2,766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467억원이며 불용액은 68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수입에 대한 의견입니다.